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노승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4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월 29일

발 의 자 : 노승재 의원(1명)

찬 성 자 : 박기재, 이정인, 추승우, 문장길,
오중석, 김태호, 전병주, 박순규,
홍성룡, 김춘례, 황규복, 이은주,
이승미, 정진철 의원(14명)

1. 제안이유

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는 현상변경 허용기준,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제한,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다수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신축을 통한 노후건축물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 이에 시·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낙후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자율정비를 유도하여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추가함(안 제3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문화재보호법 제13조,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영 제3조제1호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
 2.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 위 등)</p> <p>① 영 제3조제1호에서 “시·도조례 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을 말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)</p> <p>① 영 제3조제1호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</p> <p>2.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 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 이 인정하는 지역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이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항을 개정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대상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관련 사업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확대 가능성이 있어 비용이 발생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추진 중이나 아직 초기 단계여서 지원 규모의 추정이 실적을 바탕으로 검증되지 못한 상태임
-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대상 구역의 지정, 해당 구역에서의 정비사업 추진 사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기술적 추계가 곤란함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여차민

예 산 분 석 관 한기백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phan@seoul.go.kr